

제정 2018.01.24
개정 <부칙 참고>
개정 2020.08.14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0-약관-149 호(2020.06.30)

쿠폰몰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이 운영하는 쿠폰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회원'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 사이트에서 발행자가 제공하는 쿠폰 및 바우처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운영 및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원"이란 '제휴사'를 통해 이 서비스에 접속하여 쿠폰몰 회원으로 적합하다고 은행이 인정하는 개인으로서 이 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3. "제휴사"란 은행과의 계약에 따라 '쿠폰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접속 경로를 제공하는 국내외 사업자를 말합니다.
4. "발행자"란 '회원'에게 쿠폰 및 바우처를 제공하는 자로서 '은행'과 마케팅 제휴 계약을 맺은 업소, 시설 등을 말하며, 온라인 사업자를 포함합니다.
5. "쿠폰"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이 쿠폰몰 서비스에서 결제를 하지 않고 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할인 및 교환 증표를 말하며 회원이 이를 증표 별로 정해져 있는 사용처에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6. "바우처"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하 '물품 등' 이라 함)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기재된 증표를 말하며 회원은 이를 증표 별로 정해져 있는 사용처에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3조 (서비스 이용)

- ① 하나멤버스 또는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및 모바일 웹 사이트를 통하여 접속한 개인 회원에 한하여 별도의 가입 정보 입력 없이 이 약관에 동의 후 이용 가능합니다.
- ② 회원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쿠폰 및 바우처를 이 서비스에서 제공된 쿠폰함에 저장하여, 사용처에 해당 쿠폰 및 바우처를 제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이 획득한 쿠폰 및 바우처는 교환, 재판매 및 양도할 수 없습니다.
- ④ 회원은 본인이 구매한 바우처의 분실, 도난, 훼손, 소유권 이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4조 (유효기간)

- ① 바우처에 유효기간을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의 소멸시효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 ② 은행 또는 발행자는 물품 및 용역 제공형 바우처에 대한 제1항의 유효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유효기간을 3개월보다 짧게 정한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3개월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 ④ 회원은 은행 또는 발행자에게 유효기간 내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은 3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유라 함은 유효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로 각각의 바우처에 명시한 경우에 한합니다.
- ⑤ 은행 또는 발행자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에 회원에게 3회이상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등을 알림 메시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5조 (환불)

- ① 회원은 바우처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액 전부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유효기간 경과 전, 바우처 상의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의 요구에 따라 은행 또는 발행자는 해당 바우처와 동일한 금전적 가치의 바우처로 즉시 교환하거나 구매액을 반환합니

다.

③ 유효기간 경과 후(제6조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구매일로부터 5년까지 회원은 발행자 등에게 바우처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은행 및 발행자는 잔액의 90%를 반환합니다.

④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바우처의 최종 소지자가 가집니다. 다만, 최종 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원에게 환불한 경우 은행은 환불에 관한 책임을 면합니다.

제6조 (소멸 시효)

바우처를 구매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회원은 은행 또는 발행자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제7조 (구속행위의 적용에 따른 제한)

회원 본인이 중소기업의 대표자이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기준 7등급 이하)인 경우, 은행법(제52조의2)상 구속행위 여부 판정에 따라 바우처의 구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바우처 구매일 이후 1개월 이내 본인 명의 또는 본인이 재직중인 중소기업의 대출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8조 (책임 및 면책)

① 회원이 구매한 바우처를 은행이 제공하는 판매시스템의 결함에 의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은행은 해당 바우처와 동일한 금전적 가치의 바우처로 즉시 교환하거나 구매액을 반환합니다.

② 쿠폰 및 바우처 사용과 관련한 책임 및 면책은 발행자가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③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가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입증되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해 회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 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제9조 (분쟁해결)

이 약관과 관련하여 은행과 회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0조 (약관 외 준칙)

- ①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행자의 쿠폰 및 바우처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이 약관과 발행자의 쿠폰 및 바우처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없으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릅니다.

<부칙 1>

1. 이 약관은 2020 년 04 월 27 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부칙 2>

이 약관은 2020 년 8 월 14 일부터 개정 시행하며 기존 고객에게도 적용됩니다.